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개최

- ✓ 나이 요건, 우대형 가입 요건 및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기준 등 상품 세부내용 공유
- ✓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절차를 사전 안내하여 가입자 혼선방지 및 원활한 전환 지원 추진
- ✓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상품 안내·홍보 관련 관계기관 협조 요청

I. 개요

4.23일 금융위원회(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 기관(은행연합회, 취급 희망기관)은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4.23(목), 15:00 ~ 16:00, 서민금융진흥원 14층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회)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주재), 청년정책과장
 - (관계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 (취급 희망기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아이엠, 경남*, 수협, 카카오뱅크, 토스, 우체국
- * 지방은행(경남, 광주, 전북, 부산) 대표로 간사은행인 경남은행이 참석

II.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며,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급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 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1. 가입대상

청년미래적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5.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 예)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소득기준은 ①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②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①·② 동시충족)이며, 소득수준·근로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이 세 가지 종류로 차등 적용된다.

*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자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안 되지만,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병(兵) 급여만 있는 자는 가입가능

①**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②**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 중소기업 신규 취업 기준은 가입 신청일(‘26.6월~) 기준 전년도(‘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단,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기업 취업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인 경우 신규 취업으로 인정)

③총급여 6,000만원 초과(종합소득 4,800만원)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중족)		기여금 매칭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미대상(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200%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150% 이하	12%
			재직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득·매출은 국세청 소득 확정시기*를 감안하여 전년도 소득·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일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은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우대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전년도 확정소득은 매년 7월 이후 안정적으로 심사에 활용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우대형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중기부 발표)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이 불가능(단, 두 경우 모두 일반형으로는 가입 가능)

Ⅲ. 가입·유지심사 방안

청년미래적금은 '26.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6년 이후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15개 은행 등이 취급 기관 공모(3.9~20일)에 참여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26.5월 중 최종 취급 금융기관 확정 예정

가입 절차는 금융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루어진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 및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의 유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근속 요건을 둔다.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 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IV.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방안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품 간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단,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는 '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에 신규가입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여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그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외에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모든 절차는 이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추후에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①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 ②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통보 확인 → ③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납입 제한) → ④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⑤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 갈아타기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청년미래적금 출시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갈아타기 신청 불가)

한편, 청년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 단, 타부처·지자체 등에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을 불허하는 경우 예외

V. 기타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되나,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하여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III. 향후 계획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부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임을 강조했다. 특히 참여 희망기관들이 단순한 상품 취급을 넘어 청년 세대의 고충에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심하게 고객응대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들이 해당 상품을 제대로 인지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취급 기관들이 상품 안내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향후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리 수준 등을 조속히 확정하여 청년미래적금이 안정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서기관	양재훈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02-2100-1686)
		청년인턴		김세현 (02-2100-1697)
<협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사업부	책임자	부 장	김미혜 (02-2128-8216)
		담당자	팀 장	김용석 (02-2128-8219)
	은행연합회 수신자금부	책임자	부 장	고태호 (02-3705-5704)
		담당자	팀 장	성상택 (02-3705-5237)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안내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가입대상	청년 (19~34세)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 (6, 12%)		

※ '26.1월에서 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91년 1월~8월 사이 출생)은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적용)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구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충족)		기여금 매칭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중위소득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200% 이하	
	일반형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6%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12%

※ 중소기업 신규·재직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근무 (이직 횟수 2회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전 필수 체크포인트

- 1**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26.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이후 갈아타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출시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을 미리 하지마세요!
- 2**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있는 청년의 가입이 가능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진행합니다.
- 3** 중소기업 신규 취업 우대형 대상은 가입 신청일('26.6월~) 기준 전년도('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입니다.
- 4** 일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은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우대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5**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 및 발표 예정입니다.
- 6**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6 -

참고2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

(1) 가입대상

- (대상연령) 19~34세로 하되, ①병역이행자, ②'26년 상반기에 대상 연령을 초과한 자는 예외 인정(조세특례제한법령)
 - ①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을 연령에서 제외*(6년 한도)
 - * 예) 現 35세 & 2년 병역 이행시 35세에서 2년을 차감한 33세로 보아 심사
 - ② (35세) 청년 금융상품 공백기('26.1월 ~ 청년미래적금 가입일) 중 35세에 도래한 청년의 가입을 허용하여 정책 미수혜 최소화
- (소득기준) 기여금 대상 여부 및 기여금 지급유형^{일반·우대}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차등 지원
 - ① (일반형) ①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중위소득 200% 이하(①·② 동시충족)
 - ※ 소상공인은 일반소득자 기준으로도 가입가능(예: 개인소득 기준 만족 & 매출기준 초과 & 가구소득기준 만족시도 가입 가능)
 - ② (우대형) ①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중위소득 150% 이하(①·② 동시충족)
 -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분류
 - ③ (기여금 미대상) ①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②가구중위소득 200% 이하(①·② 동시충족)
 - 이자 소득세 면제만 적용

<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충족)		기여금 매칭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미대상(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200% 이하	6%	
		일반소득자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재직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150% 이하	12%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 (중소·소상공인 업종)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은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 가입을 제한
 -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에 따른 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우대형 가입 제한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소상공인) 중기부에서 발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 불가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도매업 등
 - 복수업체 운영시 단 한개라도 정책자금제외업종에 포함될 경우, 소상공인 요건으로 가입 불가(종합소득기준 충족시 일반소득자로 가입 가능)
 - ※ 개인소득(총급여·종합소득)으로 가입하는 경우 소상공인(매출기준)은 미심사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가입 신청일('26.6월~) 기준 전년도('25년 1월 ~ 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 * 단,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 취업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인 경우 신규취업으로 인정

[2] 상품 구조

- (만기/월납입금) 3년 / 최대 월 납입금 50만원의 자유적립식 적금
- (기여금 매칭비율) 일반형 月납입금의 6% / 우대형 月납입금의 12%
- (세제혜택) 계좌 발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특례* 부여
 -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만 부여
- (만기시 혜택) 원금 +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매칭지원) + 이자*
 - * 납입 원금 및 기여금 모두 부리
- (금리) 3년 고정금리(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 예정)
- (운영방식) 서금원·금융회사 간 '청년미래적금 취급 협약' 체결 후 금융기관은 적금상품을 운영하고, 서금원은 매달 정부기여금 지급
- (특별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기여금 혜택 반환에 대한 예외를 두기 위해 특별중도해지* 허용
 -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3개월 이상)치료 상해·질병 등(조세특례제한법)

[3] 가입심사 방안

- (가입 신청기간)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 모집 실시
- (소득심사) 전년도 소득·매출 기준으로 확인
- (자격확인심사) ①중소기업 및 ②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자격확인심사' 병행(고용부, 중기부, 국세청 협조)
- (심사절차) 금융기관 App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국세청 소득등을 전산연계하여 추가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심사 진행

[4] 유지심사 방안

- (소득·매출요건) 가입 중 소득·매출요건에 대한 별도 유지심사 미진행
- (근속요건) 만기 전 중소기업 우대형 근속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 * 만기 한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했을 경우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우대형으로 인정하고, 가입 기간내 이직은 2회까지 허용

[5] 유사상품 연계방안

-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허용
 -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에 신규가입하고, 미래적금 가입목적의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 ❶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 ❷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통보 확인 → ❸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납입 제한) → ❹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❺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 (혜택) 일반해지와 달리 해지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
 - (갈아타기 기간) '26.6월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기간에만 허용
- (타부처·지자체 유사상품) 중복가입 허용*
 - * 단, 타부처·지자체 등에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을 불허하는 경우 예외

1. 가입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 나이요건은 가입심사시에만 고려하므로,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청년미래적금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는 것인지?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급여, 군장병급여가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3억)은 초과하였으나 종합소득 기준(6,300만원)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한지?

- 소상공인으로 신청한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종합소득 기준도 동시에 확인하여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입신청 가능한지?

-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다면 소상공인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5. 3년 만기를 못 채우고 일반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만기 전 일반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미적용 예정이며, 그간 적립한 본인 납입액에 대해서는 취급 금융기관 약관에 명시된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6. 청년미래적금 금리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 예정인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3년 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 확정 후 최대한 조속히 확정·안내 예정입니다.